

의안번호	제 374 호
의결 연월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최경천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20년 3월 4일

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경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7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3월 4일

발 의 자 : 최경천, 박상돈, 박형용,
심기보, 육미선, 이상욱

1. 제안이유

-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,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존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던 노인일자리창출지원 위원회를 별도 설치·운영하도록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6조 ~ 제6조의6)
- 나. 도 지방 공기업 및 출자·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, 도 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위탁을 권장하도록 규정함. (안 제7조)
- 다.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련을 규정함. (안 제8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 - 17호
- 다. 협의 :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
- 라. 비용추계 : 첨부제외 사유서 붙임

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근로능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” 를 “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” 로 한다.

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도지사” 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” 로, “근로능력” 을 “노동의욕과 능력” 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시행계획 수립 등)” 을 “(추진계획 수립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창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 이라 한다)을 “사업 추진 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 이라 한다)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행계획” 을 “추진계획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행계획에” 를 각각 “추진계획에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행계획” 을 “추진계획” 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·운영)” 을 “(노인일자리 창출지원위원회 설치·기능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하기” 를 “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” 로, “설치·운영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 한다” 를 “둔다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한다” 를 “자문·심의한다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창출 시행계획” 을 “사업 추진계획” 으로 한다.

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도 노인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

2.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장

3.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

4. 노인복지·일자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5.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6조의3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의4(위원회의 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6조의5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.

제6조의6(위원의 수당 등)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「지방 공기업법」에 따라 도가 설립한”을 “공공기관, 민간기관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및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 공기업 및 출자·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제8조의 제목 “(생산품 우선구매)”를 “(생산품 우선구매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예산지원)”을 “(행정·재정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·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<u>근로능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<u>“노인일자리 수행기관”이란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<u>도지사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연구·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 <u>노동의욕과 능력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제5조(시행계획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.

1. ~ 7. (생략)

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도지사는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 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노인일자리 창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~ 5. (생략)

제5조(추진계획 수립 등) ① -----
----- 사업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-----
-----.

② 추진계획 -----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추진계획에-----

----- 추진계획에 -----
-----.

④ ----- 추진계획 -----

-----.

제6조(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·기능) ① -----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-----

----- 둔다.

② -----
자문·심의한다.

1. ----- 사업 추진계획 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<p><신 설></p>	<p>제6조의2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도 노인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.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장 3.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 4. 노인복지·일자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.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<p>④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
<p><신 설></p>	<p>제6조의3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

<p><신 설></p>	<p>제6조의4(위원회의 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</p> <p>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</p>
<p><신 설></p>	<p>제6조의5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.</p>
<p><신 설></p>	<p>제6조의6(위원의 수당 등)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제7조(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)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「지방 공기업법」에 따라 도가 설립한 출자·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) ① ----- 공공기관, 민간기관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및 ----- ----- -----.</p>

<p><신 설></p>	<p>② <u>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 공기업 및 출자·출연기관이 시설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8조(생산품 우선구매) ①·②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8조(생산품 우선구매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9조(예산지원) ①·②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9조(행정·재정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·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노인복지법

제23조의2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등)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(이하 “노인일자리전담기관“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.

1. 노인인력개발기관: 노인일자리개발·보급사업, 조사사업, 교육·홍보 및 협력사업, 프로그램인증·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
2. 노인일자리지원기관: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개발·지원, 창업·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·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
3. 노인취업알선기관: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 자리를 알선하는 기관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의3(생산품 우선구매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9. 1. 15.]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제1호

○ 첨부제외 사유

- 이 조례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인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6조~제6조의6) 및 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(안 제7조), 생산품 우선구매(안 제8조) 등은 권고형식의 조항이며 지원 규모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